

『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규칙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에 명시
 -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(안 제9조의2)
 - 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(안 제9조의3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조례에 포함시키고,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와 시행규칙에 나누어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일원화시켜 불필요한 규칙을 폐지하고,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